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546
------	------

2024. 3. 5.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2월 2일, 김형재 의원(찬성자 39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4.3.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김형재 의원)

#### 가. 제안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의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제명에 “지원” 을 “보호 및 지원” 으로 정비함(안 제명).
-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를 정의함(안 제2조).
- “지원” 을 “보호 및 지원” 으로 함(안 제7조의2제1항).
-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의5).

### Ⅲ. 검토의견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사업비와 운영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됨.

#### 나. 조례명의 변경

-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례명을 일치시킴으로써 법 체계의 통일성 및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파악됨.
- 현재 소상공인 관련 법률체계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로 이원화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들 법률을 모법으로 하는 서울시 조례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동 조례안의 조례명의 상위법과의 일체화는 그 법적 체계성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소상공인 관련 법률체계 >

법률	조례
「소상공인기본법」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다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원”에 “보호”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기존 조례명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나.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규정 신설(안 제2조 및 제10조)

- 동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이하 “지회”)의 정의를 규정하면서(안 제2조), 시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과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임(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u>소상공인기본법</u>」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소상공인</u>”이란 「<u>소상공인기본법</u>」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li> <li>2. “<u>소상공인연합회</u>”란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li> <li>3. “<u>소상공인연합회 지회</u>”(이하 “<u>지회</u>”라 한다)란 <u>소상공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u>와 그 산하조직인 <u>지역연합회</u>를 말한다.</li> </ol>

<p>&lt;신 설&gt;</p>	<p>제10조의5(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 구역에 있는 지회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p>

- 이는 소상공인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비와 지회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라 하겠음.

### < 소상공인법과의 비교 >

소상공인법	개 정 안
<p>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생 략)</p> <p>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0조의5(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 구역에 있는 지회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5조의2(보조금) ① (생 략)</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p>

-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법 제24조에 따라 설립(2014년 4월 30일)된 법정단체이고 지회는 연합회의 산하조직이라는 점에서 지회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서울시에 소재하는 지회는 서울특별시지회 및 20개의 자치구 지부<sup>1)</sup>로 구성됨.

○ 특히 동 개정조례안의 경우 사업비는 지회에 직접 교부토록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연합회를 통해 보조하도록 하여 보조금 교부 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는 바, 이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하 “보조금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 조치라 할 것임.

○ 즉 행정안전부 예규인 보조금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sup>2)</sup>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법에서 명시적으로 연합회를 통하여 교부하도록 정한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지회에 직접 교부하도록 규정한 동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라 사료됨.

○ 한편 현행 조례 제3조<sup>3)</sup>에 따르면, 동 조례의 적용범위는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이 아닌 이들이

---

1)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속한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조례 제3조의 적용범위를 개정하여 소상공인 지원범위에 지회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 자구 수정 및 서울시 의견

- 안 제10조의5는 지회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그 자구체계에 있어 수식어의 누락 등으로 인해 내용상 혼란이 야기 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의 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함.

#### < 수정의견 >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0조의5(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 구역에 있는 <u>지회가 같은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제10조의5(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① ----- ----- ----- -----지회가 수행하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
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의 경쟁력 ----- ----- -----.

- 한편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12조4)에 단체 지원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서울시의 주장과 관련하여, 비록 다른 조례에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측면은 있으나 그 규정이 동 조례안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치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고, 특히 특정단체 지원에 대한 명시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연합회가 법정단체로서 이미 법률에도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4)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12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형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46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2일

발 의 자: 김형재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김규남,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이경숙,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종배, 이종태, 이희원, 임춘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황유정, 황철규 의원(39명)

### 1. 제안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의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에 “지원”을 “보호 및 지원”으로 정비함(안 제명).
- 나.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지원”을 “보호 및 지원”으로 함(안 제7조의2제1항).
- 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의5).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3.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소상공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를 말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지원”을 “보호 및 지원”으로 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 구역에 있는 지회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7조의2(자료제출 요청 등) ① 시장은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li> <li>2.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li> <li>3.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소상공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를 말한다.</li> </ol> <p>제7조의2(자료제출 요청 등) ① --- ----- 보호 및 지원----- ----- -----</p>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신설>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5(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 구역에 있는 지회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의5(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을 신설함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지원 비용 발생하지만 확인결과 현재 기 추진사업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4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예산(본 개정안 제10조의5)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4년 예산내역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자치구 소상공인 및 단체 지원)	= 350,000

자료 : 2024년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산서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당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분석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